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5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정희용 · 고동진 · 김선교
박충권 · 배준영 · 최수진
박준태 · 주호영 · 김상훈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를 “1억5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의 1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u>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u>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 <u>1억5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의 130퍼센트</u> ----- ----- ----- ----- ----- ----- ----- ----- ----- ----- ----- ----- ----- ----- -.
1. ~ 4. (생략) ② ~ ⑥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